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6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부승찬·정성호·박민규

안규백 · 한정애 · 차지호

윤종군 · 김병주 · 민병덕

조계원 · 윤후덕 · 이기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6차례나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

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단서 중 "연장할"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 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기간 연장 및 연장사유·연장기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 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감사실시가 결정 된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u>연장할</u> 수 있다.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u>할</u>
<u><신 설></u>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
	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